35호

중소기업 focus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지원 제도(3)

- 중소기업 고용촉진지원제도와 가업상속지원제도 -

33호 : 중소기업범위와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

발간주제 34호 :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투자촉진지원제도

35호 : 중소기업 고용촉진지원제도와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제도

하나. 중소기업 고용촉진지원제도

고용촉진 지원제도

-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 경력단절 여성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12.1.1~'15.12.31)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 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50%감면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대 지원대상 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는 소득세 50% 감면
	감면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 단, 병역을 이행한 후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하며, 복직일 당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미경과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
		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 개정내용

기존법령	개정법령	
· 2012.1.1.~2013.12.31.에 중소기업 (재)취업시 감면	· 2014.1.1.~2015.12.31.에 중소기업 (재)취업시 감면	
세액 100% 혜택	세액 50% 혜택	
· 이 기간에 (재)취업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자	· 이 기간에 (재)취업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해당자	
(29세 이하 청년)는 3년간 100% 공제 유지	(만15~29세+60세이상+장애인)는 3년간 50% 공제 유지	

- ☞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세액감면 비율은 50%로 감소한 반면 감면대상자는 확대됨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원천-307, 2012.6.1.)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해당 업체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
- ·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하였고,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소득공제하고 해당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총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원대상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 ·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의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 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 지원내용

	·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어이 거으	(개인)에서 소득공제
기업의 경우	· 소득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
	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100분의 50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그=되어 거으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
	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100분의 50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등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원당 200만원을 세액공제

○ 지원대상

2014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 : 적용기한 2015.12.31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대상

- · 경력단절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함
- 1.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2. 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3. 퇴직일로부터 3~5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하였을 것
- 4.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대표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닐 것
-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고용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둘. 중소기업 가업상속지원제도

가업상속 지원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 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
- · 연부연납 :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지원대상 및 요건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 연부연납 특례대상 상속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총상속재산가액)
-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 지원내용

가업상속 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rightarrow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가업상속 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rightarrow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만이 대상
- ☞ 매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 초과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 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 부과
 - ☞ 가업승계 대상을 상속과 동일하게 확대 및 요건완화

○ 지원대상 및 요건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7년 이상 계 속하여 기업 영위
-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 30%)이상 소유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 에 종사
- ☞ 증여재산 : 중소·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만 해당
 - ·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 는 사업은 제외
 - · 중견기업이란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상속 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지원내용

-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 (100억원 한도)
-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 ☞ 창업자금 증여와 중복적용배제
- ☞ 신고세액공제배제
-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 사후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위치수정)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
-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단,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 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추가)
-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ㆍ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는 경우
-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종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031-259-7365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